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p> <p>제4조(지원대상) ①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 실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연구개발 우수기업 6. 추천기업 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9. 전입기업 10. 수출관련기업 11. 소재·부품 생산기업 12.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3. 명절·재해 자금 14. 기타 지원기업 15.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p> <p>제4조(지원대상) ①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 실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연구개발 우수기업 6. 추천기업 7. <삭 제> 7.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8. 전입기업 9. 수출관련기업 10. 소재·부품 생산기업 11.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2. 명절·재해 자금 14. <삭 제> 13.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현행과 같음)</p>	<p>- 7호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삭제 및 번호 올림</p> <p>- 14호 기타 지원기업 삭제 및 번호 올림</p>
<p>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강원영서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제4조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강원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호 2. 제6호 중 강원도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추천기업에 대해 강원본부가 인정한 기업(<별표1> 제6호 4) 해당 기업) 3. 제8호(강원테크노파크가 전략산업 추천기업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한 기업 포함) 4. 제9호 중 강원도 전입기업 5. 제12호 6. 제14호 중 강원본부 중소기업애로상담창구를 통해 자금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체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강원영서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제4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강원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현행과 같음)</p>	<p>- 전략지원부문 해당 지원대상을 3개로 간소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특별지원 부문으로 지정하며 강원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취급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p> <p>(이하 생략)</p>	<p>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특별지원 부문으로 지정하며 강원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취급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p>- 번호 올림</p>																												
<p>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 지원기업) 본부장은 제4조 제1항 제13호(명절·재해자금) 및 제14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제9조(명절·재해자금) 본부장은 제4조 제1항 제12호(명절·재해자금)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 번호 올림 및 14호 기타 지원기업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1. 11.)</p> <p>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2022년 3월 한도 배정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p>	<p>- 부칙 신설</p>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67 909 936 1497"> <thead> <tr> <th>번호</th> <th>지원부문</th> <th>선정기준¹²⁾</th> <th>전산코드</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창업기업</td> <td>-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업종 영위기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제조업(C) 3) 건설업(F) 4) 정보통신업(I) 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td> <td>A1</td> </tr> <tr> <td>2</td> <td>벤처기업</td> <td>-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td> <td>A2</td> </tr> <tr> <td>3</td> <td>혁신기업</td> <td>-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고시 2015-101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2015.6.2)한 첨단기술 개발업체와 동 기술을 활용한 첨단제품 제조업체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선정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업체 - 국제특허등록 업체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중전 NT, EM, KT, IT, CT, ET 마크 획득업체 포함)³⁾ - ISO, JIS, UL, CE⁴⁾ 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인증업체</td> <td>A3</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번호	지원부문	선정기준 ¹²⁾	전산코드	1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업종 영위기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제조업(C) 3) 건설업(F) 4) 정보통신업(I) 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A1	2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	A2	3	혁신기업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고시 2015-101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2015.6.2)한 첨단기술 개발업체와 동 기술을 활용한 첨단제품 제조업체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선정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업체 - 국제특허등록 업체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중전 NT, EM, KT, IT, CT, ET 마크 획득업체 포함) ³⁾ - ISO, JIS, UL, CE ⁴⁾ 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인증업체	A3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958 909 1821 1497"> <thead> <tr> <th>전산코드</th> <th>지원부문</th> <th>선정기준¹²⁾</th> </tr> </thead> <tbody> <tr> <td>A1</td> <td>창업기업</td> <td>- (현행과 같음)</td> </tr> <tr> <td>A2</td> <td>벤처기업</td> <td>- (현행과 같음)</td> </tr> <tr> <td>A3</td> <td>혁신기업</td> <td>-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기술·제품임을 확인한 기업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 - ISO, JIS, UL, CE³⁾ 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인증업체</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현행과 같음)</p>	전산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²⁾	A1	창업기업	- (현행과 같음)	A2	벤처기업	- (현행과 같음)	A3	혁신기업	- 「 산업발전법 」 제5조 및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제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기술·제품임을 확인한 기업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 - ISO, JIS, UL, CE³⁾ 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인증업체	<p>- 표의 재정보(번호 삭제)</p> <p>- 근거규정 및 개정법 반영</p> <p>- 종전 마크 및 주식 삭제</p> <p>- 주식번호 올림</p>
번호	지원부문	선정기준 ¹²⁾	전산코드																											
1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업종 영위기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제조업(C) 3) 건설업(F) 4) 정보통신업(I) 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A1																											
2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	A2																											
3	혁신기업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고시 2015-101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2015.6.2)한 첨단기술 개발업체와 동 기술을 활용한 첨단제품 제조업체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선정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업체 - 국제특허등록 업체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중전 NT, EM, KT, IT, CT, ET 마크 획득업체 포함) ³⁾ - ISO, JIS, UL, CE ⁴⁾ 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인증업체	A3																											
전산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²⁾																												
A1	창업기업	- (현행과 같음)																												
A2	벤처기업	- (현행과 같음)																												
A3	혁신기업	- 「 산업발전법 」 제5조 및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제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기술·제품임을 확인한 기업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 - ISO, JIS, UL, CE³⁾ 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인증업체																												

현행				개정안				비고
번호	지원부문	선정기준 ¹²⁾	전산코드	번호	지원부문	선정기준 ¹²⁾	전산코드	비고
4	녹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의거 환경부가 녹색기업으로 선정한 제조업체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 제조업체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한 환경성적표지(EDP)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 제조업체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 (Good Recycled product : 우수 재활용품 품질인증)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Green-Biz” 선정기업 - 기타 환경정화설비 생산업체 등 환경개선관련 제조업체 	A4		녹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녹색기업,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EDP) 인증제품 생산업체 - <삭제> - <삭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품 품질인증)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정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업 - (현행과 같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우수 그린비즈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현행과 같음)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의 재정비(번호 삭제) - 개정법 반영 및 표현 정비 - 근거규정 및 개정법 반영 - 개정법 반영 및 표현 정비
5	연구개발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등 	A5	A5	연구개발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A5	
6	추천기업 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원도청 선정 유망중소기업 및 향토기업(장수기업) 2)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및 강원도청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중 상법상 회사 3) 춘천상공회의소, 원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 (<별지 제5호 서식>) *제조업 중소기업에 한함<소상공인 등 개인기업 제외> 4) 강원도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별지 제5호 서식>) 	A6	A6	추천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삭제> 1) 춘천상공회의소, 원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별지 제5호 서식>)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별지 제5호 서식>) 	A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는 지역전략산업(A8)로 이동 - 번호 올림 및 표현 정비 - 강원도청, 강원지방중기청은 지역전략산업(A8)로 이동
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서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업체 1) 강원도내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별표1-1> 참조) 2) 시계 제조업(KSIC: 274)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KSIC: 30) 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KSIC: 26) 5) 건설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생산업체(KSIC: 23322, 23991) 6) 군부대 또는 군 관련기관으로부터 적격인증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는 음식료품 제조업체(KSIC:10~11)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어업법인 중 12. 농림수산업관련기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A7			<삭제>	A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산업(A7) 삭제 - 1)은 지역전략산업(A8)으로 이동 - 7)은 농림수산업관련기업(A13)으로 이동

현행				개정안			비고
번호	지원부문	선정기준 ¹²⁾	전산코드	전산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²⁾	
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서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강원도 전략산업, 지자체 및 강원테크노파크 육성산업, 관광업 영위업체 1) 세계 및 화장품(KSIC: 20422-3) 2) 바이오활성소재(KSIC: 10220, 10620, 10742, 10749, 10792, 10801-2, 11121, 20312-3) 3) 웰니스식품(KSIC: 10211-2, 10501, 10730, 10794, 10797, 11111, 11209) 4) 의약품(KSIC: 211, 212, 213) 5) 의료기기(KSIC: 271, 28519, 28909, 31991) 6) 세라믹신소재(KSIC: 20129, 24113, 30399) 7) 도자기, 타일, 및 유리(KSIC: 20412, 231, 232, 23324) 8) 이동통신부품 및 LCD/P 소재(KSIC: 261, 262, 26410, 26429) 9) 정밀, 광학기기(KSIC: 272, 273) 10) 에너지소재(연료전지)(KSIC: 282) 11) 신·재생에너지(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 지열가스화 복합시스템, 폐기물, 수소 등) (KSIC: 28114, 28119, 35114, 35119) 12) 환경소재(필터) 및 환경정화(정정멸균기술, EMI부품, 차세대폐기물 처리공정 등) (KSIC: 29172, 29174-5, 390) 13) 방재(KSIC: 42203 ~ 4) 14) 소프트웨어·컴퓨터 운영 관련업 및 정보서비스업 (KSIC: 582, 620, 631, 61220, 63991) 15) 영상·음반산업(KSIC: 5911-5913, 59201) 16) 지역혁신센터(RIC) 및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등(KSIC: 70) 17) 디자인산업(KSIC: 732) 18) MICARE(KSIC: 71391, 73902, 75992, 86101) 19) 기타(생물농업, 생물해양 등) 20)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아래의 관광사업 영위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관련시설업(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체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체 22) 관광기념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 	A8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 강원지역 주력산업 및 주요 유관기관 선정기업(<별표1-1> 강원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참조)	- 지원대상 <별표1-1>에 별도표시
9	전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산업단지(국가·지방 및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는 업체 - 강원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강원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이전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중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별표1-2> 참조) 	A9	A9	전입기업	- <삭제> - (현행과 같음)	- 지원대상에서 제외
10	수출관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A10	A10	수출관련기업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번호	지원부문	선정기준 ¹²⁾	전산코드	전산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²⁾		
11	소재·부품·생산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부품 전문 제조업	A11	A11	소재·부품·생산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개정법 반영
12	농림수산업 관련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단,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A13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 농어업법인은 업종제한 없이 지원
13	명절 및 재해 자금	- 설, 추석 등 자금성수기에 운전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체 - 재해, 노사분규, 연쇄부도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업체	A14	A14	명절 및 재해자금	- (현행과 같음)		
14	기타 지원기업	- 지방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 및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애로상담창구 등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체	A15	<삭제>				- 기타 지원기업(A15) 삭제
15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	-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1) 도소매업(KSIC: 45-47) 2) 운수업(KSIC: 49, 51-52)<택시운송업(KSIC:49231) 중 개인택시업은 제외> 3) 여행업(KSIC: 752) 4) 음식숙박업(KSIC: 55-56)<주점업(KSIC: 5621)은 제외> 5) 여가업(KSIC: 90-91)<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KSIC: 9124) 및 무도장 운영업(KSIC: 91291)은 제외> 6) 조선업(KSIC: 311) 7) 해운업(KSIC: 501-502)	A16	A16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	- (현행과 같음)		

주 :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3)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1-26호)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08-10호)
NT(New Technology, 신기술인증, 기술표준원),
EM(Excellent Machine, Mechanism & Materials, 우수품질인증, 기술표준원)
KT(Excellent Korean Technology, 신기술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IT(Excellen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인증, 정보통신진흥연구원)
CT(Construction Technology, 건설신기술인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T(Environmental Technology, 환경신기술인증)

4)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인증)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 국가표준규격인증)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 전기·전자분야 공업규격 인증)
CE(Certificate Of Europe, 유럽 품질인증)

5) 추천기업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주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제>

3)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인증)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 국가표준규격인증)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 전기·전자분야 공업규격 인증)
CE(Certificate Of Europe, 유럽 품질인증)

5) <삭제>

- 주식 정비 및 번호 올림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data-bbox="56 183 156 207"><별표 1-1></p> <p data-bbox="376 263 627 295" style="text-align: center;">강원도내 특산물 목록</p> <table border="1" data-bbox="96 328 902 1248"> <thead> <tr> <th data-bbox="96 328 208 373">구 분</th> <th data-bbox="208 328 902 373">목 록</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6 373 208 703"> <p data-bbox="118 486 190 598">농산물 농산 가공품류 (65)</p> </td> <td data-bbox="208 373 902 703"> <p data-bbox="230 446 884 630">감자, 쌀, 더덕, 당귀, 황기, 메밀가루, 메주,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참기름, 김치류, 한과류, 미숫가루, 느타리버섯, 인삼, 상추, 배, 들기름, 간장, 청국장, 도라지가공품, 인진쑥가공품, 사과, 복숭아, 포도, 고추, 피망, 오이, 토마토, 애호박, 찹옥수수, 통마늘, 더덕 가공품, 향토주, 마, 고구마, 도라지, 콩나물, 인삼차류, 찌뽕, 천마, 상황버섯, 메밀쌈, 오미자, 딸기, 개량산머루, 절임류, 양파, 콩, 율무, 참깨, 들깨, 기장쌀, 좁쌀, 파프리카, 시래기, 탁주, 약주, 야콘, 복분자, 찌는 떡, 찌는 떡, 연근, 두부류</p> </td> </tr> <tr> <td data-bbox="96 703 208 858"> <p data-bbox="118 758 190 805">축산물 (10)</p> </td> <td data-bbox="208 703 902 858"> <p data-bbox="230 758 884 805">한우고기, 계란, 벌꿀,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유, 채래돼지고기, 오리고기, 오리가공품, 우유류</p> </td> </tr> <tr> <td data-bbox="96 858 208 1026"> <p data-bbox="118 917 190 965">임산물 (10)</p> </td> <td data-bbox="208 858 902 1026"> <p data-bbox="230 917 750 965">도토리 목가루, 잣, 표고버섯, 산채류, 산양삼, 가시오갈피 가공품, 송이가공품, 산양삼 가공품, 오죽잎 가공품, 곰취</p> </td> </tr> <tr> <td data-bbox="96 1026 208 1248"> <p data-bbox="118 1109 190 1157">수산물 (20)</p> </td> <td data-bbox="208 1026 902 1248"> <p data-bbox="230 1101 884 1173">돌김, 미역, 다시마류, 건오징어류, 첫갈류, 황태, 조미오징어, 붉은 대게살, 횡갈용 오징어, 횡갈용 가자미, 횡갈용 송어, 횡갈용 가리비, 횡갈용 전복, 횡갈용 우렁쉥이, 냉동오징어, 냉동 도루묵, 냉동 가리비, 냉동 전복, 냉동 북방대합, 훈제송어</p> </td> </tr> </tbody> </table>	구 분	목 록	<p data-bbox="118 486 190 598">농산물 농산 가공품류 (65)</p>	<p data-bbox="230 446 884 630">감자, 쌀, 더덕, 당귀, 황기, 메밀가루, 메주,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참기름, 김치류, 한과류, 미숫가루, 느타리버섯, 인삼, 상추, 배, 들기름, 간장, 청국장, 도라지가공품, 인진쑥가공품, 사과, 복숭아, 포도, 고추, 피망, 오이, 토마토, 애호박, 찹옥수수, 통마늘, 더덕 가공품, 향토주, 마, 고구마, 도라지, 콩나물, 인삼차류, 찌뽕, 천마, 상황버섯, 메밀쌈, 오미자, 딸기, 개량산머루, 절임류, 양파, 콩, 율무, 참깨, 들깨, 기장쌀, 좁쌀, 파프리카, 시래기, 탁주, 약주, 야콘, 복분자, 찌는 떡, 찌는 떡, 연근, 두부류</p>	<p data-bbox="118 758 190 805">축산물 (10)</p>	<p data-bbox="230 758 884 805">한우고기, 계란, 벌꿀,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유, 채래돼지고기, 오리고기, 오리가공품, 우유류</p>	<p data-bbox="118 917 190 965">임산물 (10)</p>	<p data-bbox="230 917 750 965">도토리 목가루, 잣, 표고버섯, 산채류, 산양삼, 가시오갈피 가공품, 송이가공품, 산양삼 가공품, 오죽잎 가공품, 곰취</p>	<p data-bbox="118 1109 190 1157">수산물 (20)</p>	<p data-bbox="230 1101 884 1173">돌김, 미역, 다시마류, 건오징어류, 첫갈류, 황태, 조미오징어, 붉은 대게살, 횡갈용 오징어, 횡갈용 가자미, 횡갈용 송어, 횡갈용 가리비, 횡갈용 전복, 횡갈용 우렁쉥이, 냉동오징어, 냉동 도루묵, 냉동 가리비, 냉동 전복, 냉동 북방대합, 훈제송어</p>	<p data-bbox="1332 750 1456 774"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구 분	목 록											
<p data-bbox="118 486 190 598">농산물 농산 가공품류 (65)</p>	<p data-bbox="230 446 884 630">감자, 쌀, 더덕, 당귀, 황기, 메밀가루, 메주,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참기름, 김치류, 한과류, 미숫가루, 느타리버섯, 인삼, 상추, 배, 들기름, 간장, 청국장, 도라지가공품, 인진쑥가공품, 사과, 복숭아, 포도, 고추, 피망, 오이, 토마토, 애호박, 찹옥수수, 통마늘, 더덕 가공품, 향토주, 마, 고구마, 도라지, 콩나물, 인삼차류, 찌뽕, 천마, 상황버섯, 메밀쌈, 오미자, 딸기, 개량산머루, 절임류, 양파, 콩, 율무, 참깨, 들깨, 기장쌀, 좁쌀, 파프리카, 시래기, 탁주, 약주, 야콘, 복분자, 찌는 떡, 찌는 떡, 연근, 두부류</p>											
<p data-bbox="118 758 190 805">축산물 (10)</p>	<p data-bbox="230 758 884 805">한우고기, 계란, 벌꿀,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유, 채래돼지고기, 오리고기, 오리가공품, 우유류</p>											
<p data-bbox="118 917 190 965">임산물 (10)</p>	<p data-bbox="230 917 750 965">도토리 목가루, 잣, 표고버섯, 산채류, 산양삼, 가시오갈피 가공품, 송이가공품, 산양삼 가공품, 오죽잎 가공품, 곰취</p>											
<p data-bbox="118 1109 190 1157">수산물 (20)</p>	<p data-bbox="230 1101 884 1173">돌김, 미역, 다시마류, 건오징어류, 첫갈류, 황태, 조미오징어, 붉은 대게살, 횡갈용 오징어, 횡갈용 가자미, 횡갈용 송어, 횡갈용 가리비, 횡갈용 전복, 횡갈용 우렁쉥이, 냉동오징어, 냉동 도루묵, 냉동 가리비, 냉동 전복, 냉동 북방대합, 훈제송어</p>											

현행	개정안	비고																																																									
< 신 설 >	<p><별표 1-1></p> <p style="text-align: center;">강원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p> <p>1. 강원지역 주력산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산업명</th> <th style="width: 10%;">코드</th> <th style="width: 80%;">산업분류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핵심코드</td> <td>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td> </tr> <tr> <td>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td> </tr> <tr> <td>20423 화장품 제조업</td> </tr> <tr> <td>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td> </tr> <tr> <td>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td> </tr> <tr> <td>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td> </tr> <tr> <td>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td> </tr> <tr>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연관코드</td> <td>10211 수산동물 혼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td> </tr> <tr> <td>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td> </tr> <tr> <td>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td> </tr> <tr> <td>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td> </tr> <tr> <td>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td> </tr> <tr> <td>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td> </tr> <tr> <td>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td> </tr> <tr> <td rowspan="1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세라믹 복합신소재 산업</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핵심코드</td> <td>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td> </tr> <tr> <td>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td> </tr> <tr> <td>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td> </tr> <tr> <td>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td> </tr> <tr> <td>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td> </tr> <tr> <td>24113 합금철 제조업</td> </tr> <tr> <td>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td> </tr> <tr> <td>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td> </tr> <tr>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연관코드</td> <td>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td> </tr> <tr> <td>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td> </tr> <tr> <td>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td> </tr> <tr> <td>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td> </tr> <tr> <td>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td> </tr> <tr> <td>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td> </tr> <tr> <td>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td> </tr> <tr> <td rowspan="1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ICT 융합헬스 산업</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핵심코드</td> <td>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td> </tr> <tr> <td>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td> </tr> <tr> <td>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td> </tr> <tr> <td>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td> </tr> <tr> <td>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td> </tr> <tr> <td>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td> </tr> <tr> <td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연관코드</td> <td>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td> </tr> <tr> <td>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td> </tr> <tr> <td>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td> </tr> <tr> <td>27192 정형 의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td> </tr> <tr> <td>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td> </tr> <tr> <td>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td> </tr> <tr> <td>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td> </tr> <tr> <td>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td> </tr> <tr> <td>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td> </tr> <tr> <td>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td> </tr> </tbody> </table> <p>2. 주요 유관기관 선정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원도 선정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2)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및 강원도청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중 상법상 회사 3)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획득업체 4) 강원도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테크노파크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 	산업명	코드	산업분류명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	핵심코드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연관코드	10211 수산동물 혼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세라믹 복합신소재 산업	핵심코드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연관코드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ICT 융합헬스 산업	핵심코드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연관코드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 의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p>- <별표1-1>을 강원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으로 변경</p>
산업명	코드	산업분류명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	핵심코드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연관코드	10211 수산동물 혼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세라믹 복합신소재 산업	핵심코드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연관코드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ICT 융합헬스 산업	핵심코드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연관코드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 의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현행	개정안	비고
<p><별지 제1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p> <p style="text-align: center;">(생 략)</p> <p>Ⅲ. 첨부서류</p> <p>1 ~ 3. (생략)</p> <p>4. <u>복수의 업종 영위시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등 1부</u></p> <p>5. (생략)</p>	<p><별지 제1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Ⅲ. 첨부서류</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복수의 업종 영위시 주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손익계산서, 주업종확인서 등) 1부</u></p> <p>5. (현행과 같음)</p>	<p>- 실무상 필요에 따른 표현의 정비</p>
<p><별지 제3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생 략)</p> <p>주 : 1) (생략)</p> <p>2) “신규“ / “대환“ / “만기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재(“대환“ 또는 “만기연장“으로 기재한 경우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존 취급분의 변동사유를 “만기상환“으로 하여 반드시 보고)</p> <p>3) ~ 12) (생략)</p> <p>13) <u>신청사유가 “대환”인 경우 대환일, 기한연장인 경우 당초 상환기일을 기입</u></p> <p>14) <u>신청사유가 “대환” 및 “만기연장”인 경우 대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 새로이 산정된 상환기일</u></p> <p>15-16) (생략)</p>	<p><별지 제3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주 : 1) (현행과 같음)</p> <p>2) “신규“ / “대환“ / “만기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재(“대환“ 또는 “만기연장“으로 기재한 경우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존 취급분의 변동사유를 “만기상환“으로 하여 반드시 보고)</p> <p>3) ~ 12) (현행과 같음)</p> <p>13) <u>신청사유가 “대환”인 경우 대환일, “만기연장”인 경우 연장 전 만기일을 기입</u></p> <p>14) <u>신청사유가 “대환” 및 “만기연장”인 경우 대환 또는 만기연장 시점에 새로이 산정된 상환기일</u></p> <p>15-16) (현행과 같음)</p>	<p>- <별지 번호> 수정</p> <p>- 실무상 필요에 따른 표현의 정비</p>